

국제교육원 운영규정

제정 2022.02.18. 개정 2022.03.17. 개정 2022.06.27. 개정 2023.07.14. 개정 2025.07.28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원은 해전대학교 국제교육원(이하 "본원" 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업무 및 사업)

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.

-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
- ② 한국어 교육과정의 수립 및 운영
- ③ 교환학생, 유학생 등 본교 및 외부기관의 한국어 교육
- ④ 한국어 능력 측정 및 이에 관한 교육
- ⑤ 외국인 어학연수생 지원업무
- ⑥ 본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
- ⑦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

제2장 조 직

제4조 (조직)

- ① 본원은 원장, 직원 및 조교로 구성한다.
-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 (원장)

- ① 본원의 원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원장은 교육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-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 (설치)

-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 (심의사항)

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기본운영계획
- ② 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- ③ 국제교육원 입학 사정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본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장 교육과정 및 등록

제8조 (학제)

학제는 연 4학기제(봄, 여름, 가을, 겨울학기)를 원칙으로 한다. 필요시 특별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3.17.>

제9조 (과정)

본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 (입학 및 등록)

- ① 본원이 개설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입학할 허락 받은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수강료 반환)

- ① 등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. <신설 2022.06.27.>
 1. 본원에 입학할 허가받고 수강료를 납부한 학생이 입국을 하지 않고 비자승인의 철회 및 입학할 포기하는 경우

2. 본원에 입학허가를 받기 위해 수강료를 납부하였으나 비자승인의 불허로 인하여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(단, 어학연수 입국 목적과 다른 비자로 변경, 소재불명, 불법체류시 수강료 환불 불가(혼인으로 인한 F비자 변경제외))<개정 2025.07.28.>

③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반환 한다.
<개정 2022.06.27.>

1. 개강이전 : 수업료 전액 반환
2. 수업일수 1/3 경과 이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
3. 수업일수 1/2 경과 이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
4. 수업일수 1/2 경과 이후 : 수강료 반환 없음

제12조 (출석과 수료)

① 정규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7/10이상을 출석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.<개정 2023.07.14.>

① 각 학제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.

제13조 (성적평가)

성적평가는 중간, 기말 및 출석점수를 종합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
제14조 (징계 및 제적)

교육생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징계 및 제적할 수 있다.

1.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
2.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
3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4.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
제15조 (장학)

수강생 중 수업태도가 양호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① 급수별 반별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1명에 대해 100,000원을 다음 학기 등록자에 한해 지급한다.

② 수료자 중 출석율 100% 해당자에 대해 50,000원을 다음 학기 등록자에 한해 지급한다.

제5장 강 사

제16조 (정의)

본원의 강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임용되어 강의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7조 (임용)

- ① 본원의 강사는 대학이 정하는 선발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선발한다.
- ② 강사는 한 학기 단위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단위로도 임용할 수 있다.
- ③ 전임교원의 경우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강사자격을 가질 수 있다.

제18조 (강사료)

본원의 강사료 책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장 기 타

제19조 (시행세칙)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 (준용규정)

이 규정이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22.02.1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6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07.1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5.07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